

고운흥천주간보호센터

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1. 계약기간

- 이용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정한다.

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재계약을 통하여 이용기간을 연장하며, 수급자(보호자)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만료를 원하는 경우 원하는 날짜로 선택하여 계약만료일로 정할 수 있다.

2. 계약목적

- 이용계약은 어르신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기간,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기관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,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한다.

3.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

- 이용료의 재정은 보건복지가족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며 재가급여의 주 · 야간보호 장기요양급여비용 기준으로 이용료를 부과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, 비급여는 별도로 규정한다.

- 이용료 및 비용 변경 :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.

- 1)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
- 2)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장기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
- 3)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

- 그 밖의 비용부담액 :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 비급여 부분은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

구분	금액	산출근거
이용료	노인장기요양법 제40조 본인부담금	
식재료비	1식 3,900원	3,800원*제공횟수
간식비	1회 1,000원	1,000원*제공횟수
월한도초과이용료	본인부담금과 자부담을 합한 금액	
개별용품, 기호품	개비용품 구입시 실제 지급한 비용 청구	

4.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

- 신원인수인의 권리

- ① 수급자가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제공 받고 있는지, 표준수발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
- ② 계약자는 시설에서 실시하는 가족간담회 등을 통하여 정보를 교류하고, 서비스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권리

- 신원인수인의 의무

-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
-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
-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
-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

5. 계약의 해지

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- 1.이용자가 사망하였을 때
- 2.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
- 3.기관 내에서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 운영 또는 타 이용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
4.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타 이용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
- 5.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